

2016년 (제20회) 민원봉사대상 운영계획

창의적인 민원시책 추진과 헌신적인 민원봉사를 통해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을 발굴·시상하여 민원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2016년 (제20회) 민원봉사대상 운영계획

2016. 3.

행정자치부 · SBS

I. 민원봉사대상 개요

○ 주관 : 행정자치부, SBS 공동 (농협중앙회 후원)

- '96.11.16. 행정자치부와 SBS가 『민원봉사대상 규약』 협의 · 제정

- '97년 제1회 시상 후 19회 323명(공무원 274명, 농협직원 49명) 시상

'97 (1회)	'98 (2회)	'99 (3회)	'00 (4회)	'01 (5회)	'02 (6회)	'03 (7회)	'04 (8회)	'05 (9회)	'06 (10회)	'07 (11회)	'08 (12회)	'09 (13회)	'10 (14회)	'11 (15회)	'12 (16회)	'13 (17회)	'14 (18회)	'15 (19회)
16	18	18	18	18	18	20	19	17	17	14	17	19	17	17	15	15	15	15

○ 선발대상

- (공무원)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6급 이하 민원공무원

< 추천기준 >

- ① 민원을 친절·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자
- ② 주민의 불편을 헌신적으로 해결하여 주민편익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
- ③ 민원시책을 창의·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 자

- (농협) 농협 소속 「어디서나 민원」 담당직원

○ 공적분야 : 창의적인 민원시책 추진, 사회봉사활동 및 공사생활 등

○ 시상인원 : 규약상 20명 이내(大賞 1명, 本賞 16명, 特別賞 3명)

- '12년부터 매년 15명 선발 : 공무원 12명(대상1, 본상11), 농협 3명(특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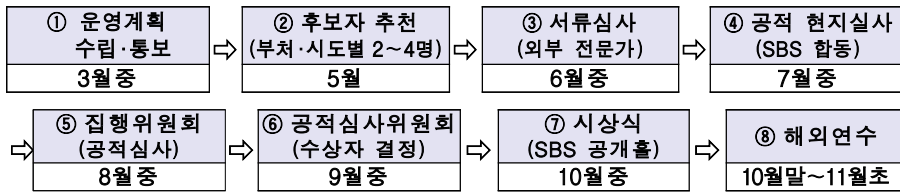
○ 시상내용

- 상패(행정자치부장관SBS사장 공동명의) 및 상금 수여

※ 상금 : 대상 1,000만원, 본상 및 특별상 각 500만원

- 특별승진(자격부여), 해외연수(부부동반) 등

□ 선정절차



II. 세부 추진계획

① 후보자 추천

- 추천기한 : 2016. 5. 20.(금)까지 (행정자치부 접수일 기준)
- 추천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시·도지사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농협중앙회장 : 농협 직원
 - ※ 소방직 공무원은 국민안전처에서 3명 추천
- 추천인원
 - (원칙) 중앙행정기관은 2명 이내, 시·도는 3명 이내 추천
 - (예외)
 - 특 행 : 특행기관 전체 정원이 2천명 미만인 중앙행정기관은 1명 추천
국토부, 해수부, 고용부, 국세청, 우정사업본부는 3명까지 추천
 - 지자체 : 인구 1천만 명 이상 시도는 4명까지 추천(서울, 경기)
인구 100만명 이하 시도는 2명까지(세종시 1명) 추천
 -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원은 교육부에서 3명 이내 추천
 - 추천대상 : 6급(상당) 이하 공무원(경찰·교원 제외), 농협직원
 -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부서 공무원으로서 추천
마감일(5.20.) 현재 공무원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 현부서
(민원부서)에서 6개월 이상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 추천마감일(5.20.)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민원업무를 담당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제외

- 추천마감일(5.20.) 현재 징계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 중앙행정기관과 언론사가 공동주관한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봉사실적 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민원봉사대상 후보자로 3회 연속 추천된 자(2회 연속추천은 가능)
- 형사벌을 받은 자
 - ※ 형사벌이나 징계벌을 받은 자가 사면 등으로 형벌기록 등이 말소되었다
라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로 수상자로 선정되기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추천 제외

- 추천방법 : 추천된 자의 소속기관 및 추천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 특 행 : 소속기관(지방청)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공적심사
- 지자체 : 시·군·구 및 시·도에서 공적심사
 - ※ 소속기관의 감사부서는 반드시 공적에 대한 현지실사를 한 후 추천

② 수상자 선정

① 선정원칙

- 후보자의 공적을 「민원봉사대상 분야별 배점 및 평점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들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상자를 선정

② 서류심사

- 추천기관에서 제출한 후보자의 공적조서 및 공적사항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기초로 「민원봉사대상 분야별 배점 및 평점기준」에 따라 심사
 - ※ 공적사항 증빙서류는 추천마감일(5.20.)까지 제출된 것에 한해 인정
-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전년도 수상자 수의 1.5배 범위내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정하여 공적 현지실사를 실시

③ 수상자 선정

- 집행위원회에서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공적심사를 실시하고 현지실사 대상자들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수상후보자 선정안」 마련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의 「수상후보자 선정안」을 심사하여 수상자 선정

③ 시상식 행사

- 시상식 : 2016. 10월 중(예정)
 - 장관님 일정을 감안, SBS·농협과 협의하여 시상식 일정 결정
 - 시상식은 당일 SBS 8시뉴스 보도, 수상자 공적활동은 익일 녹화방송(1시간)
 - 시상장소 : SBS 상암동 공개홀
 - 시상내용
 - 상패 및 상금 수여
 - 大賞 : 상패, 상금 1,000만원 / 행정자치부장관 수여
 - 本賞 : 상패, 상금 각 500만원 / SBS 사장 수여
 - 特別賞 : 상패, 상금 각 500만원 /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수여
 - 특별승진 임용장 : 시상식 후 임용권자가 소속기관에서 수여
- ※ 해당 기관장이 원할 경우 SBS 공개홀에서 소속 기관장이 직접 수여

④ 해외연수

- 연수기간 : '16. 10월 하순 ~ 11월 초순(6박 8일 예정) / 연수국가 추후결정
- 연수대상 : 수상자 전원(부부 동반)
- 연수비용 : SBS 전액 부담

⑤ 20주년기념 행사

- 기록영상물 제작, 세미나 개최 등 SBS·농협과 협의 추진(10월 초순 예정)

⑥ 추진일정

추진사항	일정(예정)	주요 추진내용 등
○ 운영계획 수립·시행(행자부)	3월 중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농협 통보
○ 포스터 제작·홍보(SBS)	4. 1.~4. 12.	● 포스터 제작·발송
○ 수상후보자 추천	5.20.(금)까지	● 시군구·특행 → 시도·중앙(4.22.) ● 시도·중앙·농협 → 행자부(5.20.)
○ 제1차 집행위원회(행자부)	5월 말	● 추천현황, 서류심사, 현지실사계획 등 보고
○ 공적심사위원 위촉	5~6월	● 민간위원(위원장 포함) 4인
○ 서류심사	6월	● 행자부와 SBS 합동
○ 제1차 합동실무회의(행자부)	6월 하순	● 공적 현지실사 요령 교육, 실사일정 협의 등
○ 수상후보자 공적 홈페이지 공개	7. 1.~8. 30.	● 행자부 및 후보자 소속 기관 홈페이지 (제출된 의견은 현지실사 시 확인)
○ 공적 현지실사	6월 말~7월	● 행자부와 SBS 합동(농협직원은 농협중앙회)
○ 제2차 합동실무회의(SBS)	8. 24.	● 현지실사 결과 의견조정, 집행위 상정안 검토
○ 추가 현지실사	8. 25.~8. 26.	● 현지실사 추가 필요 시
○ 제2차 집행위원회(SBS)	9. 6.	● 현지 확인 결과 검토, 공적심의회 상정안 검토
○ 공적심사위원회	9. 20.	● 수상후보자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
○ 수상자 확정 통보(행자부)	9. 23.	● 확정(보고) 및 기관(통보), 수상자 관리
○ 현지취재·촬영(SBS)	9. 23.~10. 7.	● 인터뷰 등 수상자 공적 취재 협조
○ 20주년 기념행사	10월 초순	● 기록영상물 제작, 세미나 등
○ 시상식	10. 21.(예정)	● SBS 시상식 계획 별도 통보
○ 해외연수	10월 말~11월 초	● SBS 해외연수 계획 별도통보

iii. 공적분야별 배점(100점 만점) 및 평점 기준

- 업무추진실적(50점)** : 창안시책, 우수시책(사례), 표창, 언론보도 등
 - 성과·실적이 증명된 시책으로 타 기관 과급 정도에 따라 차등 평정
 - ※ 업무추진실적은 추천마감일(5.20.)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 사회봉사실적 및 공사생활(30점)**
 -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실적 확인
 - ※ 사회봉사실적은 추천마감일(5.20.)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 ※ 공사생활은 직장 상사·동료 등의 평가, 지역사회평판 등을 기초로 평가
- 민원부서 근무기간(15점)** : 민원실 근무기간, 인·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부서 근무기간 등
 -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등 확인
- 공무원 재직기간(5점)** : 공무원 전체 재직 기간
- ※ 붙임 1 : 민원봉사대상 공적분야별 배점 및 평점기준

iv. 행정사항

1 추천기관 협조사항

- 수상후보자는 5. 20.(금)까지 기한 엄수하여 추천 요망
 - ※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수상후보자 추천서는 미제출로 간주
-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
- 「2016년(제20회) 민원봉사대상 운영계획」을 공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소속 민원공무원의 적극적 참여 독려
- ※ 시도는 시군구 및 읍면동 전파,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특별행정기관 전파

- 공적사항 증빙서류는 추천마감일(5.20.)까지 제출한 것에 한해 인정되므로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 「공적사항 증빙서류」를 기초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공적 현지실사」를 실시하므로 「공적사항 증빙서류」제출에 특별히 유의
- 각 기관은 추천한 수상후보자가 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강구

< 특별승진 관계규정 >

-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 제1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을 할 수 있음.

2 수상자 관리 강화

- 수상자 지속적 관리
 - 협조공문 등을 통해 수상자의 특별승진 지속적 권유
- 수상자들의 지속적인 공·사생활 수범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
- 역대수상자 전문성 활용
 - 민원행정컨설팅위원 위촉('11~'15년 27명) 및 봉사활동 멘토 참여
 - 공무원교육기관교육 강사추천(공직관 함양 및 사회봉사분야)

「붙임1」

민원봉사대상 공적분야별 배점 및 평점 기준				
확인항목	배점	평점기준	평정방법	
합계	-	100점	-	
업무추진적 (50점)	기본점수	10점	-	
	창안시책	20점	- 전국 최초 시책, 제안 또는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되어 시행된 시책으로서 실용성 여부에 따라 전국으로 파급시 5점, 시도 단위 3점, 시군구 단위 1점씩 부여(단독·공동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시책 파급 여부 등 실용성 여부를 수상 실적, 방송, 언론보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
	우수시책	15점	-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존의 업무를 발전·정착시킨 시책 또는 고객의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한 사례로 건당 3점씩 부여(단독·공동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언론보도	가점	- 신문 : 중앙 0.3점, 지방 0.2점, 기관·소식지 0.1점 - 방송 : 중앙 0.3점, 지방 0.2점, 기관·소식지 0.1점	
	표창수상	5점	- 대통령 이상 0.7점, 총리 0.5점, 장관 0.3점 - 시도지사 0.2점, 시장·군수·구청장 0.1점	- 인사기록카드, 표창사본으로 확인
사회봉사 및 공사생활 (30점)	기본점수	10점	-	
	사회봉사실적	12점	- 근무시간 후 휴일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에 한해 1회 4시간 단위로 0.2점씩 부여 - 연간 최대 인정 범위를 12회까지만 인정 - 단순위문 및 현혈 등은 1회당 2시간 인정	-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 현장 조사 - 피 봉사기관 확인 ※ 금품지원 제외
	공사생활 언론 보도 등	6점	- 공사생활(총 3점) : 모범성1점, 청렴성1점, 도덕성1점 · 인사기록카드, 징계처분말소대상, 주변 여론 등에 따라 공사생활 확인(인사, 감사부서 등 면담) · 가정(부모, 장애인, 입양, 독거노인 부양 등) · 직장(상하, 동료관계 등), · 지역사회평판(활동관련 등) - 공사생활 관련 언론보도(총 3점) · 공사생활 방송·언론보도횟수에 따라 평정 ※ 중앙(방송)지 0.3점, 지방(방송)지 0.2점, 지역기관(방송)지 0.1점	- 방송·언론보도 기사 사본에 의해 확인
	감사패 등	2점	- 감사·공로패·감사편지 등 : 0.1점 / 건 ※ 주민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하되, 의례적인 전패 등은 제외	- 인사기록카드, ※ 사본 및 촬영사진
민원부서 근무기간 (15점)	15점	- 15년 이상 15점, 12년~14년 14점, 10년~12년 12점, 8년~10년 10점, 6년~8년 9점, 4년~6년 8점, 2년~4년 7점, 2년 미만 6점 - 인정기준 · 읍·면·동, 시도 및 시·군·구의 민원실 근무시 : 전체 근무기간 인정 · 시·군·구의 민원실이 아닌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할 경우 : 근무기간의 80% 인정 · 시·도의 민원실이 아닌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할 경우 : 근무기간의 60% 인정	- 인사기록카드, 사무분장표에 의해 확인	
공무원 재직기간 (5점)	5점	- 20년 이상 : 5점, 19년~15년 4점, 15년~10년 : 3점	- 인사기록카드에 의해 확인	

※ 농협 직원의 경우, 업무 추진실적은 민원처리 교부율(10점), 신청민원 처리의 신속성(5점)을 포함하여 50점으로 평정하고 민원부서 근무기간은 별도 평정하지 않으며 재직기간에 따라 15점(20년 이상 15점, 10년 이상 13점, 10년 미만 11점)으로 평정(봉사실적은 공무원과 같음)
 ☞ 교부율 : 1위 10점, 2위 8점, 3위 6점, 4위 4점, 5위 2점(중앙회는 중간점인 6점)
 신속성 : 1위 5점, 2위 4점, 3위 3점, 4위 2점, 5위 1점(중앙회는 중간점인 3점)

「붙임2」

수상후보자 추천 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 ① 추천대상자 명단 1부(서식1)
- ② 공적조서 1부(서식2)
 - 공적 증빙서류는 5부를 작성하여 추천 공문과 함께 제출
 - ※ 증빙서류는 추천마감일(5.20.)까지 제출한 것에 한해 인정되므로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③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게시용 공적요약서 1부(서식3)
- ④ 현지조사확인서 1부(서식4)
- ⑤ 공적심사의결서 1부
- ⑥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요약서 1부
- ⑦ 민원봉사대상 추천에 대한 동의 및 서약서 1부(서식5)
- ⑧ 감사부서장(과장급) 확인서(서식6)
- ⑨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 발행, 말소전력 포함)
 - 범죄경력조회서는 추천받은 수상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 ①~⑨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문 시행과 동시에 제출

2. 추천 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공적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현지 실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한 후 엄정하고 투명한 공적심사를 실시하여 사후 수상부적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감사부서에서는 비위사실을 철저히 확인한 후 감사부서장 확인서 제출

공 적 사 항(예시)

* 가능한 개조식으로 계량화·구체화하여 작성

1. 업무추진실적

1. 창안시책(최초로 제안 또는 제도개선과제 등으로 채택되어 시행된 시책)

① 본인 창안시책

○

☞ 작성예시

○ 재개발구역내 취득·등록세 부과기준을 본인이 제안하여 공평과세 실현(연563억 세수증대)

- 정비구역지정 후 진입하는 투기성 조합원 면제혜택 방안을 위해 뉴타운·재개발 사업 지역 취득·등록세 면제 시점을 '사업시행인가'에서 '정비구역지정'으로 개정

※ 시의 조사결과 정비구역지정 후 사업시행인가까지는 보통 2년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 50%가량의 조합원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남

《증빙 및 참고자료》

- '13년 6월 행정자치부 제도개선과제 채택

- '13년 12월 지방세법 개정

- '13년 12월 전국시도 관련 조례개정 시행

- 뉴타운·재개발 사업지역 취득·등록세 면제시점 '사업시행인가'서 '정비구역지정' ('13년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② 공동 창안시책

○

☞ 위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공 적 사 항(예시)

* 가능한 개조식으로 계량화·구체화하여 작성

2. 우수시책(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존의 업무를 발전·정착 시킨 시책 또는 고객의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한 사례)

① 본인 우수시책

○

☞ 작성예시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에 산림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관련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

- 공공 및 민간시설의 유휴공간(건물지붕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증빙 및 참고자료》

- 공공 및 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정책 유공으로 장관상 수상

- 연합뉴스 및 지방신문 등에 관련기사 보도

② 공동 우수시책

○

☞ 위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3. 언론보도

년월일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
			-
			-
			-

※ 업무추진실적과 관련된 언론보도로서 보도된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로 관련 보도내용을 제출

4. 표창수상

표창명	훈격	수상년도	주요 공적내용
			-
			-
			-

※ 업무추진실적과 관련된 표창으로서 표창명 등을 기재한 후 증빙자료로 표창사본을 제출

공 적 사 항(예시)

* 가능한 개조식으로 계량화·구체화하여 작성

② 사회봉사 및 공사생활

1. 사회봉사실적

연도	봉사실적 (횟수 및 시간)	봉사장소(기관)	주요 봉사활동 내용
2016년	○○회 ○○시간	○○복지관 등	

<참고>

- ※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은 불인정하며, 봉사실적은 자원봉사센터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의해 증명된 실적만 인정
- ※ 헌혈, 단순위문의 경우, 1회당 2시간 인정되므로 봉사실적에 합산하여 기재
- ※ 금품지원은 봉사실적에서 제외되나 금품지원 사례가 있으면 <참고>란에 기재
 - ☞ ‘붙임1’의 「민원봉사대상 공적분야별 배점 및 평점 기준」 참조

2. 공사생활

○ 모범성

-

○ 청렴성

-

○ 도덕성

-

- ☞ **작성요령** : 아래 예시에 대한 각종 선행사례 중 입증 가능한 내용을 서술하고, 증빙자료(언론보도, 수상자료 등)를 제출

< 예 시 >

- 대민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청렴결백(청탁배격 등)한 공무원
- 소신 있게 일하며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공무원
-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학식·덕망이 있는 공무원
- 노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공무원

공 적 사 항(예시)

* 가능한 개조식으로 계량화·구체화하여 작성

3. 언론보도

년월일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
			-
			-
			-

- ※ 공사생활과 관련된 선행사례 등에 관한 언론보도로서 보도된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로 관련 보도내용을 제출

4. 감사·공로패, 감사편지 등

년월일	감사·공로패명	증정자	주요내용

- ※ 사회봉사 및 공사생활과 관련하여 주민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공로패, 감사편지 등에 한하여 증빙자료로 관련 감사패 사본 등을 제출

③ 민원부서 근무기간

년월일	기관명	담당업무	담당기간	비 고
'82.1.1.~'85.10.31.	○○시 ○○동	주민등록, 인감담당 등	3년 10월	민원실 근무
'05.1.1.~'08.9.30.	○○시 건축과	건축허가 등	3년9월	사업부서에서 민원업무담당
합계	-	-	7년76월	

- ※ 공무원 전체 재직기간 중 민원부서(시·도,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에 근무한 기간과 사업부서 등 일반부서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한 기간을 기재
- ※ 비교란에 민원실 근무, 일반부서에서 민원업무 담당 등을 반드시 기재
 - ☞ ‘붙임1’의 「민원봉사대상 공적분야별 배점 및 평점 기준」 참조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성 별	근속기간 (연, 월)	최종학력
○○군○○면	지방행정주사 (총무담당)	홍 길 동 (洪 吉 童)	남	23년 7월	○○대학교 ○○학과졸
공 적 사 항					
<p>☞ 작성예시</p> <p>I. 업무추진실적 [창안시책 및 우수시책]</p> <p>1. 청소년 참 살이를 위한 건강한 가정만들기 미술치료사업 운영('12.6~현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16회 102명 실시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아 계속 관리 ○ 2013년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시 '최우수상' <p>2. 가족 돌봄이 여성자원봉사자 육성 및 정신장애인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00명, 2012년 00명 자원봉사자 육성/ 지원예산액 00천원 <p>3.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2012년, 제3기(2012~2013년) 지역보건의료계획 00개 사업추진 ○ 핵심사업 : 어린이 건강관리/ 대상인원 0000명 건강관리 <p>II. 사회봉사실적</p> <p>1. ○○보육원에서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 주1회 자원봉사</p> <p>2.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식사 수발, 청소, 말벗 등 자원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부터 매주1~2회 220회 걸쳐 319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전개 <p>III. 공사생활</p> <p>1.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탁월하여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된 사례</p> <p>2. 공직생활 체험공모수기 우수공무원으로 '지역신문' 등에 10회 보도</p> <p>IV. 포상실적</p> <p>1. 창안시책 개발 유공 등으로 장관표창 등 15회 수상</p> <p>2. 헌신적인 민원처리로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감사편지 등 20회 받음</p> <p>V. 기 타 ※ 특별히 외부에 표시할 만한 선행사례 등 사회활동을 기재</p>					

☞ 작성요령 : 1인당 1매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위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현지조사확인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 여부)

품 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2016년 월 일

(현지조사자) ※ 소속기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5]

민원봉사대상 추천에 대한 동의 및 서약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 .
성 명	(한글)	(한자)	

- 위 본인은 제20회 민원봉사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관계기관에서 ①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범죄경력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업무추진실적, 사회봉사실적 등 공적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만약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민원봉사대상 공적 심사위원회나 행정자치부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6. . .

서약자 (소속)

(직)

(성명)

서명

행정자치부장관·SBS사장 귀하

[서식6]

감사부서장 확인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 .
성 명			
징계기록	사면되어 말소된 형사벌, 징계벌 등 전력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사면·말소된 사유명기(범죄경력조회서 별도첨부)		

- 상기인은 제20회 민원봉사대상 수상후보자로서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수상자로 선정되기 부적합한 흠결이 없음을 확인하며,
- 특히,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없으며 사생활과 관련하여서도 비난받을 만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 . .

확인자 소속 : 감사담당관실

직위 : 감사담당관

직급 :

성명 : (서명)

행정자치부장관·SBS사장 귀하